

기획조사 06-067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러시아 및 동부 유럽편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기획조사 06-067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러시아 및 동부 유럽편 -

kotra
해외조사팀

요 약

환경, 안전, 위생 등이 많은 국가들 내 정책형성의 중요 결정요소로 등장하면서, 관련 기술규격을 증명하는 인증이 시장 진입의 결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표준 인증서는 필수 인증과 선택 인증 분야로 구분된다. 강제 인증은 섬유, 화장품, 장난감 등의 생활 소비재; 의약품; 가전제품; 식품, 화학물질, 석유, 가스, 건설 등을 위한 설비 시설에 적용되며, 정기적으로 적용 품목이 갱신된다. 선택 인증은 업체들이 자사 제품이 러시아 정부의 품질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효율적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 인증은 선적이 간헐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일회성 및 무역거래가 1-3년 지속 시 필요한 연속성 수출 인증으로 구분된다. 러시아 시장에 수출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업체들에게는 연속성 수출 인증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크게 드나, 전체 선적 제품이 아닌 샘플 검사가 행해지므로 장기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다. 한편 바이어와 가격 협상 시 미리 인증에 대한 언급을 하여, 가격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입찰에 응할 경우에도 인증비용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체코, 폴란드의 경우, 2004년 EU 가입과 더불어 EU 공동규격인 CE마크를 적용하고 있다. CE마크의 대상품목과 인증절차는 EU이사회 지침에 근거하여 정해지고 있는데, 2006년 기준 22개 품목군이 CE 인증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다. CE마크 취득 절차는 1990년 총괄적 접근방식에 따라 제정된 8개의

인증방식(Module A, B+C, B+D, B+E, B+F, G, H) 중 해당 품목 지침이 정한 방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U 진출희망업체는 수출품목이 CE 대상품목인지 확인 후, 품목별 인증방식 모듈에 따라 '사양확정', '시험실시', '자료준비', '적합성 선언', 'CE마킹'의 5단계 CE 마크 획득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역내 시장으로 반입 및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제품 회수, 벌금부과 또는 징역형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체코 및 폴란드 내에서만 적용되는 인증으로는 보안장치 인증제도인 'CAP(체코)'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E'마크(폴란드)가 있다. 'CAP'은 모든 보완장치 및 부품에 적용되며 보완장치의 품질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 없이는 체코 내 유통 및 판매가 불가하다. 'E'마크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수 EU 회원국에서 자동차의 환경, 전등 및 시그널, 안전과 관련된 120여종의 자동차 부품류에 적용되는 강제인증으로, 미 이행 시 경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머리말 / 1

II. 러시아 / 3

III. 체코 / 18

IV. 폴란드 / 27

V. 시사점 / 45

I. 머리말

- 환경, 안전, 위생 등이 국가들 내 정책형성의 중요 영향요소로 등장하면서, 관련 기술규격을 증명하는 인증이 시장진입의 결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인증이 의무사항일 경우, 취득 불가 시 시장진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선결조건임.
 - WTO체제 출범 후 각국의 관세는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다양한 형태로 증가추세임.
 - 비관세장벽은 크게 반덤핑, 세이프가드, 보조금/상계관세, 원산지 규정 등의 전통적 분야와 인증, 환경, 문화(audio-visual)정책 등 근본적으로는 각국 국내정책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해외시장을 5대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제도' 및 '취득절차'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업체들에게 관련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해당 5개 지역의 조사대상국가
 - 구주 : EU, 독일, 영국, 프랑스
 - 러시아 및 동부유럽 : 러시아, 체코, 폴란드
 - 북미 : 미국, 캐나다
 - 아시아 :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 중남미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 이 중 본 보고서는 '동부 유럽편'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러시아, 체코 및 폴란드의 인증 제도를 살펴봄.

○ 해당 3개국의 경제성장률(2005년 기준)

- 러시아 : 6.4%

- 체코 : 6.1%

- 폴란드 : 3.4%

II. 러시아

1. 개요

가. 배경

- 러시아 정부는 1993년부터 특정품목에 대해서 러시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사유로 의무 인증을 받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 러시아의 인증 시스템은 하기의 법률에 근거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 연방 기술 규제 법 184조
 -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측정 기준 통일에 관한 법률
- 러시아 인증 관련 기관은 표준인증기구(GOST), 정부 부처들 내부의 연방 기구, 중앙인증기관, 실험연구소 등임.¹⁾

1) 참고로,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국제 인증 기구에 가입되어 있음 : System of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for Tests of Electrical Equipment on Conformity to the Safety Standards; System of Certification of Passenger Cars, Trucks, Buses and Other Transport Vehicles (UN EEC); System of Certification of Hand Guns and Ammunition; System of Certification of Electronic Articles (IEC); International System of Certification of Metrology Equipment and Instruments; Agreement on Mutual Recognition of Tests of Imported Aircraft and Certification of Elements of Airplanes; UN International Navigation Organization (Navigation Safety Convention).

나. 러시아 표준 인증서

- 러시아 표준 인증서는 러시아 내 유통되는 제품이 러시아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선택 인증과 필수 인증으로 구분됨.

1) 선택 인증

- 선택 인증은 필수 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위해서 사용됨.
- 법적 절차를 거쳐 인증 시스템에 등록된 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며, 필수 인증기관 중에서도 선택 인증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현재 러시아 표준 인증 기구에서는 65개의 선택 인증 시스템이 인정되고 있음.
- 선택 인증은 제조업체, 무역업체 등이 자사 제품이 러시아 정부의 품질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효율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음.

2) 필수 인증 사항

- 필수 인증에 해당하는 재화, 서비스는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정기적으로 해당 목록이 갱신됨.

- 동 목록에는 러시아 연방 법에 따라 재화 혹은 서비스에 대한 공식 품목명, 해당 품목 코드, 필수 사항, 기타 관련 문서 제출 등이 표기됨.
- 또한 러시아 관세청에서는 관련법 #01-06/107(2005.1.12), #01-06/46757(2005.11.29), #01-06/19028(2006.6.2) 등을 제정하여,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러시아로 수입되는 제품 중 필수 인증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음.
- 필수 인증 취득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음.
 - 섬유, 화장품, 장난감 등의 생활 소비재
 - 의약품, 가전제품
 - 식품, 화학물질, 석유, 가스, 건설 등을 위한 설비 시설

3) 특이사항

- 제품이 이미 위생 인증, 축산 인증, 화재 안전 인증 등 다른 인증이 있는 경우 해당 인증서들의 등록 번호를 명기해야 함.
 - 위생 인증의 경우 인체와 접촉이 있거나 인체에 해가될 시 취득해야 하며, 이유식,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필요함.
 - 형태 승인 인증의 경우 측정기기 등에 필요함.
 - 화재 안전 인증은 인화성이 있는 물질, 소방기기 등에 필요함.

- 식물 인증은 곡식, 씨앗, 쌀, 야채, 과일 등에 필요함.
- 한편 재료, 상품의 종류와 기획특한 국제 인증의 종류에 따라 인증절차는 통상 수주일일 소요됨.
- 또한 인증 실험을 요청받은 기관의 규모, 인적 자원 구성에 따라 인증 발급 기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인증서의 효력은 기관에 상관없이 동일함.
- 무역 거래의 경우 물건의 선적 이전에 인증 절차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인증을 요청받은 기관의 기술적 능력, 인적 자원의 유동성 등에 따라 인증 검사가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수입자는 동 물품이 필수 인증 대상 물품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필수 인증 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인증기관 뿐 아니라 타 인증기관을 통해서도 취득 가능함.
- 한편, 필수인증대상 품목이 아닌 물품은 하기와 같음.

- 중고 설비

- 인증 취득 후 수입된 제품의 추가 부속품

- 기 취득 인증서 사본, 동 부속품이 기 수입물품의 부속품에 해당한다는 확인서, 설계도에 표기된 부품이라는 확인서, 동 물품이 별도 판매되지 않고 해당 설비의 조립 마감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는 서약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함.

-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입되는 견본품
-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사용 물품(단, 정해진 금액, 수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재외공관, 국제기구 및 동 기관 소속 직원의 사용 물품

4) 일회성 수출 인증 & 연속성 수출 인증

연간 수출 물량에 따라 인증서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일회성 수출인 경우와 연속성 수출인 경우로 구분됨.

일회성 수출의 인증

- 특정 물품의 정해진 수량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선적이 간헐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사용되며 수출업자가 계약서나 송장을 통해 해당 수입업자에게 증명할 때 발급이 됨.

연속성 수출의 인증

- 제품의 특성상 무역거래가 1년 이상 3년 미만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에 필요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선적 횟수와 수량에 상관없이 다양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적합함.
- 인증 후 제품의 동일성 확보를 위해 관리 기관으로부터 검열을 받아야하는 책임이 있음.

- 참고로, 연속성 수출의 인증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인증 번호는 인증기관에서 제출한 서류에 근거하여 결정됨.

인증 번호	특징
2, 7	- 특정한 계약에 대해서 적용되며, 통상 1-2년간의 정해진 기간 내 수입된 물품인 경우(scheme # 2),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수입된 경우(scheme #7)
3, 3 a	- 연속 생산용, 생산자용 등으로 불리며, 인증 검사 결과와 다른 조건에 따라 1-3년간 발행이 됨.

□ 아울러 해당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인증 번호	해당 서류
2,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 등록 증명서, 세무 등록 증명서 2. 선화증권 3. 상업송장, 탁송화물운송장 4. 생산자 인증서 5. 사용 설명서, 제품 사양(사진 필참, 외관 사항 명기) 6. 제품 라벨(화장품, 가전기기 등의 경우) 7. 위생 인증 8. 기타 참고할만한 서신, 각종 인증 내역 등 9. 신청인의 주요 사항(회사 대표 성명 등을 포함) 10. 생산자 주소
3, 3a(외국기업에 의해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 생산 범위(카탈로그, 광고지 등) 2. 제품 사양(사진 필참, 외관 사항 명기) 3. 사용설명서(기술적 특징이 기술된 것) 4. 제품 라벨(화장품 등의 경우) 5. 생산자의 국제 인증 6. 생산자로부터의 위임장(직인 필수) 7. 신청인의 주요 사항(회사 대표 성명 등을 포함) 8. 생산자 주소 9. 위생 인증서 10. 참고할만한 서신, 기타 인증 내역 등 11.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
<p>참고사항 : 모든 서류에는 신청인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러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어야 함.</p>	

2. 주관 기관, 검사 및 시험 기관

가. 개요

- 러시아 표준 인증 기구(GOST)는 정부의 공식 인증기관이며, 기술 규제 및 표준 관리청의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음.
 - 명칭 : 기술 규제 및 표준 관리청(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 주소 : Russia, Moscow, Leninsky Prospect ave., 9
 - 전화번호 : (7-495) 236-0300
 - 팩스번호 : (7-495) 236-6231, 237-6032
 - 이메일 : info@gost.ru
 - 홈페이지 : www.gost.ru

나. 역할 및 활동분야

- 측정과 표준화 부분의 개발 및 실행을 담당
 -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일반 규정 및 권장 사항 등을 설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품질과 생산 시스템의 구축
 - 필수 인증 사항과 선택 인증 사항에 대한 등록 및 적합도 평가

-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선정된 필수 인증 대상 물품에 대한 인증 사항 및 해당 인증에 필요한 각종 규범 문서의 결정
- 인증 규칙에 대한 관리, 인증 시험 결과에 대한 대외 공표 등
- 또한 행정상의 등록, 인증시스템의 운영, 적합도 판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으며, 인증과 관련된 공식 정보의 공표, 인증 절차와 규정에 정의된 기타 기능을 수행
- 러시아 표준 인증 기구는 다음과 같은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 인증기관, 인증 시험소에 대한 승인 및 등록 관련 기록 보관
 - 인증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 및 관련 기록 보관
 - 각종 인증 내역에 대한 등록 및 기록 보관
 - 품질관리 시스템과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취득한 기업정보 보관
 - 인증, 시험관련 조직 구성 및 방법론적 근간 지원
 - 동일 재화와 서비스, 용역에 대한 안정적 인증 시스템 개발
- 더 나아가 지역 사무소, 인증센터, 실험연구소 등의 종합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

다. 기타

- 러시아 표준 인증 기구의 권한을 위임받은 인증센터는 중앙 연방 구역(18개), 북서 연방 구역(10개), 우랄 연방 구역(6개), 시베리아 연방 구역(11개), 프리볼스키 연방구역(15개), 남부 연방 구역(16개), 극동 연방 구역(10개) 등이 있음.

- 한편 모스크바 소재 인증 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 기관명 : Rostest Moscow

 - 주소 : Russia, 117418, Moscow, Nakhimovsky Prospect ave., 31

 - 전화번호 : (7-495) 332-98-26, 129-86-25, 129-31-33

 - 팩스번호 : (7-495) 124-99-96, 124-04-92, 129-28-00

 - 이메일 : info@rostest.ru, ElenaUS@rostest.ru

3. 인증서 발급 절차

- 1994.9.21일에 공표된 '러시아 연방 내 제품 인증 절차'에 따라서 진행됨.

- 동 문서에 따라 제품의 인증 시 제품 사양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며, 안전도 검사 등 문서상의 내용과 일치성을 검증하게 됨.
 - 인증신청서 제출

- 신청된 인증 요청에 대한 적정 시스템의 결정
 - 견본 결정과 견본 테스트
 - 생산 시스템에 대한 평가(해당 인증에 요구되는 경우)
 - 테스트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증 발급 여부 결정
 - 해당 인증서 발급
 - 인증된 제품에 대한 감찰
 - 제품이 규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통지
- 신청자는 해당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기관이 없을 경우 러시아 표준 인증 기구로 송부해야 함.
 - 신청서를 접수한 인증기관은 접수 후 한달 이내에 인증에 관한 절차와 해당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연구소 목록 등을 통보해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리스트 중에서 연구소를 선택 하여야 함.
 - 신청자는 선택한 연구소에 인증 대상 제품 견본 및 해당 제품 관련 기술적 문서들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테스트를 실시한 연구소에서는 제품이 규격에 부합할 경우 인증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함.

- 필요 시 생산 인증(혹은 품질 인증)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반영이 됨.
- 연구소로부터 제품이 규격에 부합될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유효기간 : 3년 이하)를 발급하게 되는데, 이 때 해당 제품은 러시아 표준 인증 기구에서 관리하는 인증취득 제품 리스트에 등재되고, 인증 신청인에게는 인증서가 송부됨.
- 한편 제품 생산자는 인증 마크를 해당 제품, 포장, 기술서류 등에 표기해야 함.
- 인증서 유효기간동안 제품에 대한 검열이 실시되는데, 동 기간 중 제품사양, 부품, 기술, 회사명 등이 변경 될 시 인증기관에서는 제품의 인증서와 인증마크 사용을 금지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음.
- 또한 인증 신청 수수료는 필수 인증의 경우 러시아 연방 재무부에서 결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며, 선택 인증의 경우 신청자와 인증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결정됨.

4. 미이행 시 제재사항

- 인증 부착 의무 제품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비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됨.
- 또한 인증 취득 후 규격 미달 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 회사에 10일 이내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됨.

- 해당 기업이 명시된 시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제품을 모두 환수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됨.
- 법원에서 제품의 환수 판결을 내리면 환수 기한이 주어지며, 해당 회사는 환수 기한 내에 제품을 모두 수거해야 함.
- 또한 법원의 판결이후 한 달 이내에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환수에 대한 사실을 공지해야 함.
- 만약 해당 기업이 기한 내 제품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서 제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환수 관련된 비용은 모두 동 기업에서 부담하게 됨.

5. 참고 사항

- 수출 물량과 제품의 범위에 따라 적절한 인증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함.
- 수출자가 정기적으로 다양한 범위에서 러시아로 수출을 하게 된다면, 유효기간이 긴 연속성 수출의 인증을 받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나, 장기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모두 유리함.
- 또한 일회성 수출의 경우 전체 선적 제품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연속성 수출 인증의 경우 샘플 검사로 대체되기 때문에 간편한 이점이 있음.

- 한편 인증 신청 시 철저한 사전 자료 준비를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것임.
- 러시아의 제품 분류 기준에 맞는 분류를 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바이어와 가격 협상 시 미리 인증 비용에 대한 언급을 하여, 가격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종 입찰에 응할 경우에도 인증 비용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용함.
- 수출자와 수입자간 어느 쪽에서 인증을 받을 것인가도 중요한 선택 사항인데, 수입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수출자의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으나, 해당 인증 만료 기간까지 수입자가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 따라서 러시아측 거래선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수출자측에서 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
- 러시아 인증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사전 준비 사항인데, 국내에서 직접 인증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적합한 인증 대행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유리함.
- 또한 불법경로를 통하거나, 인증을 회피 및 허위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행위 등은 오히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 간혹 인증 대행 기관에서 '하나의 인증서에 내의, 소프트웨어 등 동질적이지 않은 품목의 인증을 포함시켜 통관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세관 검사 과정 중에 물품 전체가 세관에 압류될 수도 있음.

III. 체코

- 체코는 2004년 EU 가입과 더불어 CE인증제도를 광범위하게 채택하고 있음.
- 그 밖의 체코 내에서만 적용되는 인증제도로는 보완장치 분야의 CAP(Česká Asociace Pojišťoven)가 있음.

1. 체코 보완장치 인증제도(CAP) 개요

구분	제도 내용	비고
제도의 성격	강제인증제도	
도입시기/근거규정	1991년/CAP 지침 및 CSN 규격	
규제지역	체코 전역	
적용대상 품목	보안장치	
제도 주요 내용	전기 및 수동 보안시스템 안전성 및 품질 검토, 시험 검사 및 인증서 발급	
주관기관	Urad pro technickou normalizaci, metrologii a statni zkusebnictvi (기술 표준화, 도량형 및 국가시험 부서)	
신청 시 필요사항	신청서, 제품 기술정보 및 샘플, 체코어 매뉴얼, CE마크 보유 필수	
공장검사 여부	필요 시 실시	
승인획득 비용/ 소요시간	·검사: 제품 종류에 따라 20~220유로 ·인증서 발급 : 71유로 ·소요시간 : 3개월	
미이행 시 제재사항	체코 내 유통불가	

- 보안장치 인증제도는 1991년에 체코 보험회사협회(CAP)에서 인증기관을 설립하면서 최초로 도입됨.
- 본 인증서는 CAP 자체 지침 및 체코 고유 규격(CSN 규격)에 따라 발급되고 있음.
- 동 인증제도는 모든 보안장치 및 부품에 해당되며 보안장치의 품질 및 안전성 등급을 확인하는 제도임.
- 본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CE마크를 획득해야 함.
- 세부 적용대상 품목은 하기와 같음.
 - 전기 보안장치 : CCTV, 센서, 보안시스템 및 제어반, 무선 시스템, 신호장치 등
 - 수동 보안장치 : 금고, 안전 자물쇠, 보안 창문 및 문, 쇠창살, 자동차용 보안장치 등

2. 주관 기관

- 기관명
 - 체코 산업통상부 내 기술 표준화, 도량형 및 국가시험 부서 (Ministerstvo obchodu a prumyslu, Urad pro technickou normalizaci, metrologii a statni zkusebnictvi)

□ 기관 개요

- '20/1993 Sb' 법률에 의해 산업통상부의 한 조직 부서로 설립됨.
- 기술 표준화, 도량형 및 국가시험에 관한 정부 지침의 준수를 감독함.
- 법률 부서(기술 규격화, 도량형 및 국가시험 검사와 관련된 법률 규정), 국제 관계 부서, 도량형 부서, 국가고시 및 기술 표준화 부서, 경제부서(예산 관리, 기관 내부 운영 등)로 구분됨.

□ 연락처

- 주소 : Gorazdova 24, P.O.Box 49, 128 01 Praha 2, Czech Republic
- 전화 : +420-224-907-111
- 팩스 : +420-224-915-064
- 웹주소 : www.unmz.cz
- 이메일 : unmz@unmz.cz
- 기관성격 : 정부
- 운영예산 : 정부예산

- 설립년도 : 1993년

3. 검사 및 시험기관

가. Certifikační institut CAP (인증기관 CAP)

기관 개요

- 1991년 체코 보험회사협회(CAP)에서 자회사로 설립됨.
- 전기 보안장치 인증 실시, 보안장치 설치·서비스·경비업체를 자체 지침 및 CSN 규격에 따라 검토하여 인증 및 등록을 실시함.

연락처

- 주소 : Na Porici 12, Praha 1, 110 00, Czech Republic
- 전화 : +420 224 875 639
- 팩스 : +420 224 875 612
- 웹주소 : www.cicap.cz
- 이메일 : sekretariat.cicap@cap.cz

기관성격 : 사립

운영예산 : 자체예산

설립년도 : 1991년

나. 기타 검사 및 시험 기관

1) Trezor test s.r.o. : CAP 지침 및 CSN 규격에 따라 보안장치
의 검사를 실시함. (사립기관임)

주소 : Na Vrsku 67, Klecany, 250 67, Czech Republic

전화 : +420 284 892 997

팩스 : +420 284 890 139

웹주소 : www.trezortest.cz

이메일 : trezortest@trezortest.cz

2) Testalarm Praha s.r.o. : CAP 지침 및 CSN 규격에 따라 보
안장치 검사를 실시함.

주소 : Bozanovska 2098, Praha 9, 193 00, Czech Republic

전화 : +420 281 925 639

팩스 : +420 281 925 639

웹주소 : www.testalarm.cz

이메일 : info@testalarm.cz

기관성격 : 사립

운영예산 : 자체예산

설립년도 : 1996년

3. Narodni bezpecnostni urad (NBU, 국립 안전국)

CSN 규격 및 Co. 413/2005 규정(기밀 정보 규정)에 따라 보안장치 및 정보시스템 검사와 인증을 실시함.

기밀 정보 관련 보안장치일 경우 NBU 인증서 발급이 필요

연락처

○ 주소 : Na Popelce 2/16, Praha 5, 150 06, Czech Republic

○ 전화 : +420 257 283 444

○ 팩스 : +420 257 283 200

○ 웹주소: www.nbu.cz

○ 이메일 : certifikace.kis@nbu.cz

□ 기관성격 : 정부

□ 운영예산 : 정부예산

4. 인증 승인절차

가. 인증기관 담당자의 인증 승인절차 및 규정 설명

□ 웹사이트(www.cicap.cz)에서 가격표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는 것이 가능함.

나. 신청서

□ 기재내용 : 신청 업체명 및 연락처, 생산 업체명 및 연락처, 생산품목 기술 정보 및 용도 표시

□ 신청서 송부 (우편 또는 메일 접수) :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 접수(수입상 접수의 경우 '생산업체 선언'이 필요)

□ 신청서와 같이 송부하는 서류

○ 제품 검사 결과(이미 다른 검사 기관에서 시험이 실시되었을 경우)

○ 제품의 기술 정보 및 사진

○ 체코어 사용/설치 매뉴얼

- 제품의 CE 마크
- 업체 품질 관리 인증(보유할 경우)

다. 승인 절차

- 검사용 견본 송부
- 송부된 모든 자료 검토 및 적합 규격을 바탕으로 검사 실시 및 인증서 발급 실행에 대한 협약서 제안 송부
 - 내용 : 인증 과정이 실시될 규격, 비용, 소요 기간 등
- 협약서 체결
- 협약서 체결 후 적합한 규격에 따라 검사 실시
- 생산업체/공급업체 품질 관리 검사 실시
 - 생산-구매-판매 운영, 품질 관리, 재고 관리, A/S 조치, 제품 문서 관리, 고객 기술 지원 등에 대해 검토함.
- 검사 결과를 문서로 업체에 통보함.
- 성공적인 시험 결과 및 검증 기관의 조건 충족 이후 시험 증명서 및 인증서를 발급함. (인증서 유효 기간: 2년)

- 불합격일 경우 검증기관은 불합격 사유를 문서로 설명하고 수정 방법을 제시함.
- 인증서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것을 증명하는 선언과 더불어 신청해야 함. (인증서 유효기간: 3년)

CAP 인증서 발급 절차			
(1) 승인 절차 설명		기관	
(2) 신청서 송부		신청자	
(3) 검사용 견본 송부		신청자	
(4) 발송된 자료 검토		기관	
(5) 협약서 제안 작성		기관	
(6) 협약서 체결		신청자 및 기관	
(7) 시험 및 공장검사 실시		기관	
(8) 검사결과 업체에 통보		기관	
결과 불성공		결과 성공	
(9) 구체적인 불합격 사유 통보	기관	(9) 인증서 발급 및 CAP 로고 사용 허가	기관
(10) 수정 가능성 검토	신청자	(10) 인증서 재발급 가능	기관

5. 미이행 시 제재 사항

- 보안장치는 CE마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체코에 수입이 가능하나 CAP의 인증서 없이 체코 내 유통 및 판매가 불가능

IV. 폴란드

- 폴란드는 2004.5.1일 EU 가입을 계기로 EU의 강제 규격인증 제도인 CE 마크를 도입한 바,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특정제품들을 폴란드로 수출, 판매하기 위해서는 CE마크가 있어야 함.
- 그 밖에 자동차 및 특정 자동차부품에 적용되는 "E"마크(E 20)가 있음.

1. CE 마크

가. 제도 개요

- EU 공동의 CE마크 도입과 더불어 과거 폴란드의 강제인증 제도인 PCBC(Polish Center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의 "B" 마크는 강제인증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선택 인증이 되었음.
- CE 마크가 요구되는 21개 품목群은 하기와 같음.
 - 완구류, 단순압력용기, 가스기기, 기계류, 전자파관련제품(전자기 정합성 또는 양립성), 통신단말기, 계량저울, 신체보호장비, 이식용 의료기기, 온수보일러, 건축자재, 저전압기기, 의료장비, 민수용 폭약, 방폭기기, 레이저용 선박, 승강기, 압축장비, 무선통신 및 통신단말기기, 냉각장치, 실험진단용 의료기기

나. 주관기관, 검사 및 시험기관

1) 주관 기관

가) 폴란드 인증센터(PCA : Polish Centre for Accreditation)

주요 업무

- 인증기관의 인가
- 검사기관의 인가
- 실험실(laboratories)의 인가
- 인가된 기관 및 실험실 감독
- 인가된 기관/실험실 리스트 관리

기타 활동

- PCA는 외국의 인가기관과 협약을 맺어 인가 기관 및 실험실에 대한 다자간 인정(multilateral recognition)을 추진할 수 있음.

연락처

- 주소 : ul. Szczotkarska 42, 01-382 Warszawa
- 전화 : (+48 22) 355 7000

- 팩스 : (+48 22) 355 7018
- 홈페이지 : www.pca.gov.pl

나) 경쟁 및 소비자보호사무소 (Office for Competition & Consumer Protection)

주요 업무 : 경쟁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 시장과 상품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연락처

- 주소 : Plac Powstancow Warszawy 1; 00-950 Warszawa
- 전화 : (+48 22) 556 0800
- 홈페이지 : www.uokik.gov.pl

2) 검사 및 시험기관

개요

- 지정인증기관(Notified Body)이라고 불리며, 검사성격에 따라 적합한 검사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임.
- EU 회원국(폴란드) 당국이 지정하며 EU 집행위에 통보됨.

- 해당지침/규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테스트 실험실로 가능함.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지정 인증기관이 될 수 있음.
- EU 가입 직후 폴란드에는 지정인정기관이 40여개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06년 기준 100개 이상이 있음.

주요 업무

- 제품 검사
- 대상품목에 대한 적용 모듈 결정
- 기술 자료 및 설계 서류 평가 등

다. 강제인증 승인절차

CE 마크의 승인절차

1) 개요

- CE마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획득 가능한데, 완구류, 전자 기정합성, 기계류, 개인 보호장비 등의 품목은 EU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의한 의무적 시험검사가 요구되지는 않음. (자기인증)

- 이 경우 CE마크 의무자(제조자, 수입업자 등)는 스스로 자사제품이 EU 관련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EU 표준규격에 부합됨을 선언(적합성 선언)하고, 이를 증빙하는 적합성인증서를 관계당국이 요구할 때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즉, CE마크 획득이 제조업자의 적합성 선언만으로 가능한 품목인 경우 EU 지정검사소를 통할 필요 없이 자국내 시험검사소를 통해 적합성인증서를 발급 받아 CE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 단 EU세관 등 관계당국이 증빙자료를 요구할 때, 이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됨.
- 한편,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절차에 관한 안정검증 필요 시, 해당 제품은 상품화 이전에 EU 지정인증기관(Notified Bodies)의 사전검증을 거쳐 CE마크를 발급 받아야 함.
 - 지정인증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서류검사, 현장실사 등 검사방법은 해당품목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
 - 역외국이 EU와 검사결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협정에서 정한 자국 내 검사소에서 CE마크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2) CE마크제도의 시행절차

- CE마크의 절차는 품목과 관련지침의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8개의 표준모듈 중 지침에 정해진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CE마크제도의 시행절차는 하기와 같음.
 - EU품목별 지침 제정 → EN규격 제정 → 각국별 규격과 조화조치 시행 → EU 역내 강제시행 → 제조자 및 대리인 CE인증 획득 → CE마크 → 통관 및 유통 → 각국 사후 검사 및 관리

- 따라서, EU역내에 제품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제품이 CE마크의 대상 여부 인지를 확인하여 하기 5단계로 CE마크 부착준비를 해야 함.

< CE 마크 절차 >

<제 1 단계> 사양의 확정	① 해당상품과 관련된 위험이 기술된 각종 규격 파악 ② 관련 지침상의 필수요건을 항목별로 정리 ③ 관련규격과 지침상의 필수요건의 적합성을 증명(문서화) ④ 사용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응을 설명(문서화)
<제 2 단계> 시험의 실시	① 필요시 시험기관은 기술보고서 작성(기술문서 첨부용) ② 관련 지침에 규정된 규격시험 실시 ③ 작동검사 실시
<제 3 단계> 자료의 준비	① 상품의 사용설명서 작성 ②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 작성 ③ 필요시 샘플검사
<제 4 단계> 적합성 선언	① 지침상의 필수요건을 기초로 한 적합성 선언서 작성
<제 5 단계> CE 마크	① 품목에 따라 생산자명 및 안전성 표시등 명판 부착 ② CE마크 제작, 부착

가) 사양의 확정

① 해당 상품의 위험성과 관련 규격 파악

- 대상품목이 소비자의 건강, 위생, 안전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EU지침으로 고시된 경우 관련 EN 규격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함.

② 관련 지침상의 필수요건 항목별로 정리

- EU지침상의 필수요건에 제품이 적합한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③ 관련규격과 지침상의 필요요건에 적합함을 증명(문서화)

- 상기 체크리스트에 의거, 제품이 관련 규격에 적합함을 문서로 증명함.

④ 사용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응방안 제시

- 제품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잘못 사용 시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이나 라벨링을 준비하는 동시에 위험방지방법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시험 실시

① 필요 시 시험검사기관은 기술보고서 작성

- 기술보고서는 필수요건에 비해 시험검사 당시 해당 제품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설명함.

② 관련 규격에 규정된 시험실시 (적합성 평가)

- CE마크 제품의 지침규격 적합성 평가절차는 모두 8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음.
- 모듈의 단독(A, G, H) 또는 복수(B+C, B+D, B+E, B+F)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설계단계와 생산단계의 양면에 대해 적합성을 입증해야 함.

- 모듈 A, G, H는 설계평가와 제조평가의 양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각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설계단계의 모듈인 B나 생산단계 모듈인 C, D, E, F는 서로 조합되어야만 함.

다) 자료의 준비

① 상품의 사용설명서 (매뉴얼)

- 사용설명서나 제품설명서(매뉴얼)는 각 지침상의 필수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를 업체 스스로가 점검해야 함.
- 사용설명서상의 오류는 제품자체의 하자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용설명서로 인한 사용자 피해 시 책임은 전적으로 제품 생산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② 기술문서 작성

- 기술문서는 EU 내에 유통되는 CE 마크 대상제품을 사후 관리하기 위해 또는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적합성 선언서에 서명한 사람에 대하여 요구됨.

※ 기술문서의 내용

- 생산자의 이름, 주소, 제품의 명칭
- 제품개요서(제품전체도면 및 부품, 제어회로 등)
- 해당 EU지침 명기
- 해당지침에 따른 데이터
- 지침상 필수요건
- 관련규격 목록(EU규격, 국제규격, 해당국가규격 등)

- 제품설계와 관련된 사양서
- 위험성 방지를 위한 설명서
- 생산자의 요구에 따라 인증기관, 시험소가 발급한 기술 보고서
- 생산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검사, 품질시스템 심사에 대해 EU 인증기관이 발급한 적합성 증명서(증명서 번호)
- 사용설명서(매뉴얼)

③ 필요시 샘플검사

- EU 샘플 형식검사는 이의 신청을 접수한 기관이 관련제품의 지침 필수요건 만족도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임.
- EU 인증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생산자(역내외 불문) 또는 EU지역 내 대리인이 신청하며 신청서와 첨부자료는 다음과 같음.

※ 신청서

- 신청자명 :생산자명, 생산자 주소 또는 EU역내 대리인명 및 주소
- 제품의 제조 장소
- 제품의 형식 및 명칭

※ 첨부자료

- 기술문서
- 시험시료 (필요한 경우)
- 기타 설계자료, 안전분석자료, 제작도면 등 제작자료, 품질매뉴얼이나 품질계획서 등과 같은 품질보증자료

- 여타 인증기관이나 시험소에서 실행된 시험결과 존재 시 시험성적서 또는 여타 규격을 획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자료 제시

라) 적합성 선언

- 적합성 선언서는 통관시점에서 1차적으로 세관에 제출됨.
- EU 적합성 선언서의 내용은 각 품목지침에 정해진 사항을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생산자 또는 EU역내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 제품의 명칭
 - 제품의 형식 및 제조번호
 - 대리인이 선언하는 경우 제품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
 - EU지침 등 제품 관련 규정
 - 필요한 경우 EU인증기관의 명칭 및 주소
 - 경우에 따라 조화된 규격(EN규격 등)
 - 경우에 따라 사용된 국내기술규격과 사양서
 - 생산자 또는 EU역내 대리인을 대표해서 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의 이름 및 서명
- 적합성선언서는 원칙적으로 제품사용 설명서와 동일한 언어로 기재함.
 - 즉,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의 언어로 표기되어야 함.
 - 선언서의 용지는 통상 A4크기가 적당함.

- 적합성 선언서의 견본은 생산자 또는 EU역내 대리인이 보관하고 EU회원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며 최종제품 생산 후 최소한 10년간 보관해야 함.

마) CE마크 제작 및 부착

① 제조자 성명 및 안전성 표시와 같은 명판부착

- 해당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라벨링, 경고문, 사용설명서 등을 부착함.

② CE마크제작 및 부착

- 1993.7.22일 공표된 EU이사회 결정 93/465/EEC에 따라 CE마크 제작 및 부착

③ 지정인증기관의 인증절차

□ 인증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거침.

- CE마크 획득을 위한 검사의뢰(신청 시 자료첨부) → 샘플 송부 → 검사 및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회의 → 인증서 교부

④ 공장검사

검사 및 평가 단계에서 제품 샘플의 검사 외에도 필요 시(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관련 품목의 지침이 요구될 경우) 현장실사를 시행함.

심사내용

○ 공장심사 시 심사원은 제조공장과 제조장소의 검열과 필요 시 테스트를 실시함.

○ 이 외에도 제품시스템 관련 서류, 사내품질기록서, 사내 또는 외부기관에 의한 검사보고서, 테스트 데이터, 심사원의 자격에 대한 서류 등을 심사함.

심사원수 및 공장심사 소요기간

○ 심사원수는 검사의 복잡성에 따라 1-2명이며, 공장심사일수도 검사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5일내에서 완료됨.

⑤ 승인획득비용 및 소요기간

폴란드에서 CE 마크를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대상제품의 기술적 복잡성과 검사항목에 따라 제각기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움.

획득 비용은 제품群별로 천차만별이며, 몇 백 달러부터 몇 만 달러까지 소요될 수 있음.

- 소요기간은 비교적 단순한 제품의 경우 몇 주(週) 내에도 가능하나, 복잡한 제품은 몇 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 일부 제품群에 대한 CE 마크 획득비용과 소요기간은 하기와 같음.²⁾
- 제품群별 CE 마크 획득비용 / 소요기간 (예시)
 - 저전압기기 : PLN 1,200 ~ PLN 4,500 / 약 6주
 - 기계류 : PLN 8,000 ~ PLN 20,000 / 3개월
 - 신체보호장비 : PLN 1,850 ~ PLN 3,700 / 2개월 ~ 4개월
 - 완구류 : PLN 500 ~ PLN 4,000 / 2주 ~ 2개월
 - * 환율 : US\$ 1은 약 3 PLN

라. 미이행 시 제재사항

- CE 인증이 요구되는 품목(群)의 경우, 인증 미획득 시 폴란드 내 수입과 판매가 불가능함.
- 불법으로 CE마크를 부착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10만 PLN (약 32,000불)의 벌금을 내야 함.

2) 단, 이는 일반적 기준이며, 한 제품群내에 많은 세부품목이 있는 바, 세부품목별로 다시 달라짐.

2. 'E' 마크 (E 20)

가. 제도 개요

- 'E' 마크('E Mark')는 ECE 규정(ECE regulations)에 근거한 강제인증제도이며, 특정한 자동차 부품류에 적용됨.
- 현재 폴란드를 비롯한 다수 EU 회원국(서유럽 및 동유럽)과 그 밖의 동/남유럽 국가들이 'E' 마크를 도입하고 있음.
 - ECE(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는 제네바에 소재한 UN 하위기구로서 EU 국가 및 여타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음.
- 'E' 마크는 국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폴란드의 경우 E 20로 되어 있음.
 - 예 : 독일 E 1, 프랑스 E 2, 이탈리아 E 3 등
- 'E'마크는 자동차의 환경, 전등 및 시그널, 안전 등과 관련된 120여종의 부품에 적용됨.³⁾

3) asymmetric headlamp, retro-reflecting device, rear registration plate lamp, direction indicator, end-outline marker-, front/rear position-, side-, stop lamp,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oor latch and hinge, braking, seat-belt anchorage, seat belt, anti-theft, front fog lamp, diesel smoke and power, external projection, audible warning device, tyre, fire risk, filament lamp, speedometer, safety glazing, child restraint system, headlamp cleaner, rear-view mirror, emission, sound level 등.

나. 주관기관, 검사 및 시험기관

1) 주관 기관

폴란드 인증센터(Polish Centre for Accreditation)

- 주요 업무 : 인증기관, 검사기관 및 실험실의 인가, 인가 기관 및 실험실 관리 감독 등
- 연락처
 - 주소 : ul. Szczotkarska 42, 01-382 Warszawa
 - 전화 : (+48 22) 355 7000
 - 팩스 : (+48 22) 355 7018
 - 웹사이트 : www.pca.gov.pl
 - 이메일 : sekretariat@pca.gov.pl, pca@pca.gov.pl

2) 검사 및 시험기관

자동차수송연구소(The Motor Transpor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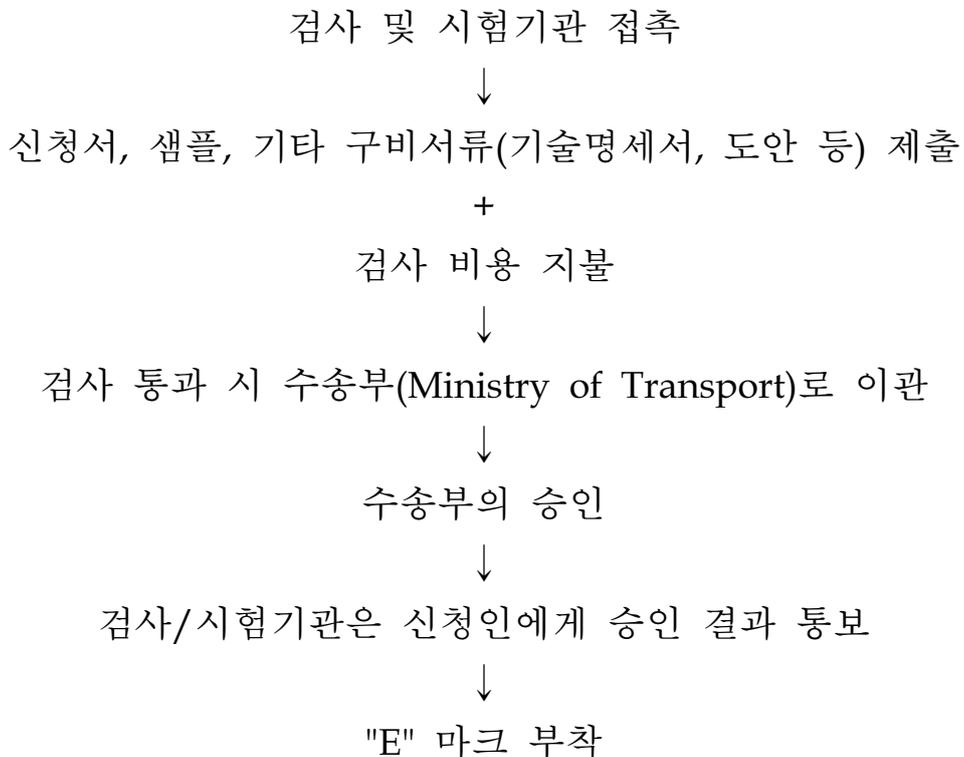
- 주요 업무 : 도로안전 관련 연구, 차량 타입(type) 승인 및 테스트, 자동차 부품 테스트, 관련 실험실 운영 등
- 연락처
 - 주소 : ul. Jagiellonska 80, 03-301 Warszawa
 - 전화 : (+48 22) 811 3231
 - 팩스 : (+48 22) 811 0906
 - 웹사이트 : www.its.home.pl

□ 자동차산업연구소(Automotive Industry Institute)

- 주요 업무 : 자동차 분야의 연구, 조사 및 개발활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테스트 및 검사 등
- 연락처
 - 주소 : ul. Jagiellonska 55, 03-301 Warszawa
 - 전화 : (+48 22) 811 1421
 - 팩스 : (+48 22) 811 6028
 - 웹사이트 : www.pimot.org.pl
 - 이메일 : e-mail : info@pimot.org.pl

다. 강제인증 승인절차

□ 승인절차



'E' 마크의 모양



라. 미이행 시 제재사항

승인 없는 부품의 판매는 금지됨.

승인이 없는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사용자는 경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V. 시사점

- 공산체제 붕괴 및 EU 가입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동부유럽 국가들이 서구제도의 도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인증이 동 시장 진입의 선결조건이 되고 있음.

1. 러시아

- 러시아의 의무인증은 건강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섬유, 화장품, 장난감 등의 생활 소비재; 의약품; 가전제품; 식품, 화학물질, 석유, 가스, 건설 등을 위한 설비 시설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음.
- 업체들은 '일회성' 혹은 '연속성' 수출 인증을 취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러시아로 정기적 및 다양한 범위에서 수출을 하는 경우 전체 수출품이 아닌, 샘플검사에 한하는 '연속성' 수출 인증이 적당함.
- 러시아 인증기관은 러시아 표준인증기구(GOST)이며, 러시아 각 연방구역 내 인증센터들에게 인증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인증이 필요한 업체들은 각 연방 내 인증센터에 인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해당 인증기관은 인증 관련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연구소 목록을 통보하며, 신청자는 해당 리스트 중에서 연구소를 선택해야 함.

- 인증서(유효기간 : 3년) 발급 절차는 신청서 제출, 견본 결정과 견본 테스트, 테스트 결과에 대한 평가와 인증 발급 여부 결정, 인증서 발급, 인증된 제품에 대한 감찰 등으로 구성됨.
- 인증 신청자는 상기 인증서 발급 절차를 위하여 검증 연구소에 인증 대상 제품 견본 및 해당 제품 관련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함.
- 한편 인증절차는 기관 및 연구소에 따라 많은 시간을 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인증취득에 응할 필요가 있음.
- 바이어와 가격 협상 시 미리 인증비용을 고려하여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종 입찰 응찰 시에도 인증비용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용함.
- 수출업자로서 가급적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단점이 있으나, 인증 만료 기간까지 독점권을 보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2. 체코 및 폴란드

- 체코와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 공동 인증인 CE('Conformité Européene'의 약자로서 '유럽 적합성' 의미)를 적용하고 있음.

- CE인증은 2006년 기준 22개 품목군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EU 진출희망업체는 우선 자사 수출희망제품의 CE 적용대상 여부 및 적용 모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⁴⁾
- 수출희망품목이 CE 대상품목이 아닐 경우, 해당 EU 수출국에만 유효한 인증이 있는지 확인함.
 - EU 회원국 내 독자적 인증은 감소추세이며, 존재 시에도 자율인증인 경우가 대부분임.
 - 그러나 유럽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 구매에 선호가 큰 것을 감안할 때, 인증부착여부가 제품의 판매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국의 자율인증 획득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수출희망품목이 CE 대상품목일 경우 하기의 'CE마크 획득 5단계'를 수행해야 함.
 - CE 마크 획득 5단계 절차 : 사양확정, 시험실시, 자료준비 적합성선언, CE 마킹
- 업체가 스스로 '적합성 절차'를 수행할 여건이 되지 못하거나, 수출희망품목이 인증기관의 기술심사 등을 필요 시 인증기관 (NB : Notified Bodies) 및 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인증 취득 절차를 취해야 함.

4) 'CE 적용 대상 품목 및 품목별 적용 모듈' 상세히 보기 : KOTRA 기획조사보고서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구주편 (06-060)'.

- 품목의 모듈과 관계없이 제조자는 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반드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함.

- CE 인증기관(NB)은 EU 각 회원국이 지정하거나, EU와 '인증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 한정되는데, 일부 EU 인증기관은 국내에 지사를 두고 있음.

- 국내 CE 인증기관 : TUEV Rheinland Korea Ltd. (www.kor.tuv.com), 한국 SGS (www.kr.sgs.com), BSI Korea (www.bsi-korea.com) 등

- 그 밖에 자문 가능기관 : 산자부 기술표준원 (www.ats.go.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www.ktl.re.kr), 중소기업청 (www.smba.go.kr) 등

2006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기획조사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5년 해외지역이슈 돌아보기	2006.1
06-002	최근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 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책	2006.1
06-003	베트남의 WTO 가입시 우리 수출 및 투자에의 영향	2006.1
06-004	한-인도 CEPA 체결과 대인도 수출유망품목	2006.1
06-005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2006.2
06-006	BRICs 이후 유망시장, 남아공 시장여건 분석	2006.2
06-007	북한의 개방 전망과 개성공단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으로 살펴본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2006.2
06-008	對인도 투자, 이것만은 알아두자	2006.2
06-009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	2006.2
06-010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2006.3
06-011	한국, 3년 후 중국 수입시장 1위 부상 전망	2006.3
06-012	수출할 때 따라야하는 일본의 인증마크	2006.3
06-013	한-칠레 FTA 발효 2년 후 칠레시장에서의 우리제품 점유율 변화	2006.3
06-014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6.4
06-015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2006.4
06-016	2006. 2/4분기 수출전망 및 대한수입규제 현황	2006.4
06-017	주요 분야별 대미 FTA체결국의 대응현황	2006.4
06-018	중, 금년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 크게 강화	2006.4
06-019	섬유교역자유화 1년을 평가한다: 서남아시아 섬유산업 동향 및 영향	2006.4
06-020	일본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시사점	2006.4
06-021	일본 농산물 포지티브제 도입과 시사점	2006.4
06-022	북미 자동차부품 시장의 변화와 기회	2006.4
06-02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2006.5
06-024	장강삼각주 IT산업 성장과 우리기업에 대한 시사점	2006.5
06-025	한중일 산업협력, 그 첩경	2006.5

06-026	중국 진출기업 세무 리스크 동향 및 시사점	2006.5
06-027	탄소시장과 우리의 참여 가능성	2006.5
06-028	해외진출 한국기업 원고 대응동향 및 경쟁국 대응사례	2006.5
06-029	2006년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2006.5
06-030	한-아제르바이잔 및 한-UAE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확대방안	2006.6
06-031	한-EU FTA 체결 영향 및 현지 업계 반응조사 - 현지 경쟁동향 및 바이어 반응을 중심으로	2006.6
06-032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1) : 북미편	2006.6
06-033	아프리카 新성장 엔진, 앙골라를 주목하라	2006.6
06-034	알기 쉽게 정리한 베트남 투자절차	2006.6
06-035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2) : 구주편	2006.6
06-036	환율파동에 따른 한일수출경쟁력 비교	2006.6
06-037	200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6.6
06-038	2006년 하반기 수출전망	2006.6
06-039	중국 내수시장 공략, 변화의 트렌드를 읽어라	2006.7
06-040	한-EU FTA 추진관련, EU 비관세장벽 현황 및 피해사례 조사	2006.7
06-041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2006.7
06-042	아랍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대응책	2006.7
06-043	WTO/DDA 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2006.8
06-044	중국의 신노동계약법 주요쟁점과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2006.8
06-045	06 중국투자기업 그랜드 서베이	2006.8
06-046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3) : 아시아편	2006.8
06-047	아프리카 7개국 진출 유망분야	2006.9
06-048	금년 대중수출 둔화 원인 분석 및 전망	2006.9
06-049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9
06-050	일본 e-비즈니스 시장, TechNiCs로 승부하라	2006.9
06-051	무역에 있어 세계 기술장벽 (TBT) 동향과 피해사례	2006.9
06-052	FAQ로 알아보는 China RoHS	2006.9
06-053	중국 산업정책의 변화, 4가지 대응 포인트	2006.9
06-054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및 대응사례(4) -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UAE -	2006.9

06-055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북미편	2006.9
06-056	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경제동향 및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006.10
06-057	한-리비아 교역투자동향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	2006.10
06-058	FTA 통한 분야별 해외기업 성과 제고사례 분석 - 미국과 FTA 체결국 기업을 중심으로 -	2006.10
06-059	부품소재 대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 251개 일본 수입상 모니터링 조사 -	2006.10
06-060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구주편	2006.10
06-061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른 수출환경 변화 및 시장진출 확대 방안	2006.10
06-062	주요국의 e-Business 현황, 유럽편	2006.11
06-063	2006 세계의 틈새시장 틈새품목	2006.11
06-064	EU 환경규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06.11
06-065	중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조치의 의미와 영향	2006.11
06-066	Q&A로 살펴보는 EU 화학물질관리제도 (REACH)	2006.11

□ 무공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6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6.1
06-002	2006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6.1
06-003	2005 다시보기, 2006 미리보기	2006.1
06-004	APEC 투자환경설명회 2005 종합보고서	2006.1
06-005	극동 러시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2006.2
06-006	주요국 한류와 문화산업시장 동향 - 한류, 유행에서 산업으로 -	2006.2
06-007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 러시아 . 캐나다 편	2006.3
06-008	주요국의 자원현황 및 개발동향 II 말레이시아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호주 편	2006.3
06-009	IK Annual Report 2005 - 외국인투자유치의 성취, 그리고 새로운 도전	2006.3
06-010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6.6
06-011	유럽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6.6
06-012	러시아 SEZ 진출 가이드	2006.6

06-013	2006 서울국제식품전 결과보고서	2006.6
06-014	5년을 앞서가는 중국 비즈니스 전략	2006.6
06-015	현장에서 읽는 중국 환경시장 : 중부 6개성을 가다	2006.6
06-01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7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2006.7
06-018	한국 싱가포르 대만 투자환경 비교조사	2006.7
06-019	2006 해외투자백서	2006.7
06-020	Q&A로 본 중국투자 A to Z	2006.7
06-021	전문가에게 듣는 중국투자 포커스	2006.7
06-022	중동아프리카지역 산유국의 주요 플랜트 개발정책 및 참여 유망 프로젝트	2006.9
06-023	중동아프리카지역 발주기관/에이전트/EPC업체 디렉터리	2006.9
06-024	독일 자동차 부품 OEM 납품 가이드	2006.9
06-025	KOTRA 해외마케팅사업 성공사례	2006.10
06-026	우리 기업의 국제협상.계약 실패사례	2006.10
06-027	베트남 투자법령집	2006.10
06-028	중국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	2006.10
06-029	한 미 FTA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략	2006.11

□ 산업페이퍼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주요국의 환경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4
06-002	주요국의 전자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3	주요국의 자동차부품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06.6
06-004	Global Medical Map (의약품편)	2006.6
06-005	Global Medical Map (의료기기편)	2006.6
06-006	주요국 IT 유망분야 및 진출방안	2006.6
06-007	주요국의 신발산업 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06-008	주요국의 산업용 섬유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2006.6
06-009	주요국의 기계산업동향 및 진출방안	2006.6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2006 CHINDIA 시장진출전략 심포지엄	2006.6
06-002	중국투자의 현주소와 성공전략 세미나	2006.8
06-003	한미 FTA, 새로운 대미진출 기회와 활용방안	2006.10
06-004	알제리 투자진출 설명회	2006.11
06-005	요르단 투자환경 설명회	2006.11

□ 산업연구

번호	제목	발간일자
06-001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2	말레이시아의 주요 산업	2006.8
06-003	폴란드의 주요 산업	2006.8
06-004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산업	2006.8

작 성 자

- ◆ 김삼식 차장 (바르샤바 무역관)
- ◆ 신재빈 차장 (프라하 무역관)
- ◆ 김정훈 과장 (모스크바 무역관)
- ◆ 신순재 과장 (해외조사팀)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러시아 및 동부 유럽편 -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6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